

의안번호	제 2759 호
의 결	2024.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쌍자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 3. 27.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59
----------	------

발의연월일 : 2024. 3. 27.

발 의 자 : 이쌍자, 김향숙, 김석한,
김원순,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7인)

1. 제안이유

고성군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생리용품을 차별 없이 지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급이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5호

- 예고기간: 2024. 4. 1.(월) ~ 2024. 4. 8.(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

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